

##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1.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0. 10. 16

다. 상 정 일 자 : 2000. 10. 16

(제89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건설과장 김 용 현

나. 개정사유

-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따라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령이 정하거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제 사항인 바, 위임된 상위 법률의 규제 근거가 없음.

다. 주요내용

- 동 조례 제7조(과태료)군수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게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동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원인자 부담금과 동법 제67조의 규정의 손해자 부담금의 법률 위임에 따른 조례로서 과태료를 징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금회 삭제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첨부 :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  
부담금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부담금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7조(과태료) (삭제)</p>